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안 번호	262
----------	-----

제출년월일 : '97.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그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가 95. 12. 29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소비자보호조례로 제정 소비자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가. 조례를 제정하게된 목적과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7대기본권리 및 역할을 정함(제1조, 제3조, 제4조)
- 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위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생활안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내지 제9조)
- 다. 소비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소비자보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제12조)
- 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지켜야할 일정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내지 제19조)

마. 소비자피해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 특히 소비자의 직접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정함.
(제20조, 제26조)

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제27조, 제29조)

사. 소비자보호시책 및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 내지 제33조)

아.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이조례 시행전에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항, 제3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이하“시”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5조 (위해방지) ①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교육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 또는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제 3 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때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경우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등은 파주시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 (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조치) ①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자의 의무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4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유효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제15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0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

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 및 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 방문, 전화, 전신, 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검사, 제출요구) ①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소비자피해구제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비자피해조정) ①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소비자 소송의 지원) ①시장은 소비자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조사, 권고 및 공표

제27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7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 (권고 및 공표) ①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 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 검사를 거친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 7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0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1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시 관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6호의 경우에는 인상율이 10%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책심의를 받는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파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 이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消費者保護法〔1986・12・31〕
〔法律第3921號全文改正〕

改正 1995・12・6 法律第4980號(基金管理基本法)
1995・12・29 法律第5030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을 規定함과 아울러 消費者保護施策의 綜合的 추진을 위한 基本的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者”라 함은 物品을 製造(加工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2.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및 用役을 消費生活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消費者團體”라 함은 消費者의 權益을 擁護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消費者가 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第3條 (消費者의 基本的權利)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權利를 享有한다.

1. 모든 物品 및 用役으로 인한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로부터 보호받을 權利
2. 物品 및 用役을 選擇함에 있어서 필요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받을 權利
3. 物品 및 用役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相對方・購入場所・價格・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選擇할 權利
4. 消費生活에 영향을 주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政策과 事業者의 事業活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權利
5.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節次에 의하여 적절한 補償을 받을 權利
6.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
7. 消費者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團體를 組織하고 이를 통하여 活動

(후 68)

할 수 있는 權利

第4條 (消費者的 役割)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習得하는 동시에 民主的이고 성실한 行動을 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第2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等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改正 95.12.29>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4. 消費者의 건전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지원·육성

第6條 (危害의 방지) ①國家는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 인한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事業者가 지켜야 할 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物品 및 用役의 成分·含量·構造등 그 중요한 내용
2.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警告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基準을 事業者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定期的으로 試驗·檢査 또는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財政經濟院長官은 각종 危害情報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消費者團體, 病院, 學校등을 危害情報 報告機關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7條 (計量 및 規格의 適正化)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事業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計量으로 인하여 損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計量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주 68)

●소비자보호법시행령^(1996. 3. 30) (대통령령제14962호전문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업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①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소비자보호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사업의 사업명·사업주체·사업내용·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이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방향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향
4. 기타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

(추 72)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매년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실적의 부의)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과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①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등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이용시설·공동구매 및 판매사업등
3.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운영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찰서·소방서·보건소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추 72)

第9章 物價・公正去來・外資

第1節 物價・公正去來・消費者保護

●物價安定에 관한法律^(1975·12·31) 法律第2798號

改正 1980·12·31 法律第3320號(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1993·3·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5·1·5 法律第4861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物價의 安정을 기함으로써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 및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第2條 (最高價格의 指定등) ①政府는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緊要한 物品의 價格, 不動產등의 賃賃料 또는 用役의 代價의 最高價額(이하 “最高價格”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은 生産段階·都賣段階·小賣段階등 去來段階別 및 地域別로 指定할 수 있다.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最高價格을 계속 維持할 事由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廢止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高價格을 指定하거나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條 (價格의 表示) 主務部長官은 消費者의 保護 또는 公正한 去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物品을 生産·販賣하거나 그 賣買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用役의 제공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의 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를 表示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4條 (公共料金등의 決定) ①法律에 의하거나 事實상 國家가 獨占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專賣價格 및 事業料金(이하 “公共料金”이라 한다)을 決定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主務部長官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價格이나 기타의 料金(手数料를 포함한다)을 決定·承認·認可 또는 許可할 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주 56)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996. 3. 1] [조례 제112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위원회는 파주시에 설치·운영한다.

제 3 조 (기능) ①위원회는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공업용수)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등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퍼센트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간부급 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 8 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0 조 (실무위원)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무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2 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인 생 략

문서유통량 50% 줄이기 적극 실천합시다

경 기 도

우 441- 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1 / ☎(0331) 251- 9898 / 담당자 정 용 안

문서번호 경총 41250 - 66
시행일자 1997. 1. 20 (3년)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결	시 장	지	
집	일자 시간	결	부시장
	1997. 1. 21	재	주 장 50
수	번호	공	과 장 전결
	265/80		
처 리 과	기업지원과		
담 당 자	이 수호	계 장	계

제 목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송부

기획감사담당과실자치계자문협조

1.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우리도가 제정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는 물론 해당시.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1 부 끝.

경 기 도 지 사

수 신 처 : 거 (01-53), 러 (지역경제과장)

경제총괄과장 전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도"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 2 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 (위해방지)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 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①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 조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도지사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①도지사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타를 설치할수 있다.

③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기구를 둔다.

제 3 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11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소비자보호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고자 하는 도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5. 설립년월일
6. 회원의 수 (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재정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시군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 시군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등의 경우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5조 (시험, 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 검사를 의뢰할 경우 도지사는 시험, 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 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3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도·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도·시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도지사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도·시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소비자피해조정)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조사 · 권고 및 공표

- 제30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1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도지사가 제24조에 의한 시험, 검사나 제30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2조 (권고 및 공표) ①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제30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 하도록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 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 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 검사를 거친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 7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소비자보호 및 도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5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사항 자문
5. 도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시·군 관여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시·군별 인상율이 10%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역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4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